■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2. 31.>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 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 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 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 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금액을 납부할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		
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		
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		는 수익의 일부를
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	법 제32조제1항제3호	
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		3년 이내
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		
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3년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2년
을 위반한 경우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		2년
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		5년
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2년
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		2년
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		
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		
기한 경우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6개월 이상
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2년 초과
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4년 초과
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5년 초과

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7년 초과
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10년 이내